

# 1. 建築士法 施行規則中 改正令

建設交通部令 第61號 1996. 4. 13

건축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 2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제19조 제1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2항중 “공사감리기록대장”을 “공사감리수급대장”으로 한다.

4. 공사감리수급대장

제22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 2(처분결과통보) 도지사는 법 제28조 및 법 제29조와 영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취소·업무정지명령 또는 등록말소를 한 경우에는 이를 다른 도지사와 건축사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11조 및 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 또는 등록의 취소처분이나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건축사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7일내에 별지 제34호 서식에 의하여 그 처분전에 계약을 체결한 업무의 현황을 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설계수급대장 또는 공사감리수급대장에 기재하여 도지사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25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 2(수탁사무처리를 위한 세부기준작성) 건축사협회는 영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별표 2의 비고란중 제3호를 삭제한다.

별표3의 처분기준란의 “건축사사무소 및 건축사”를 “건축사사무소 또는 건축사”로, “소속건축사 및 건축사보”를 “소속건축사 또는 건축사보”로 하고, 동표 제10호에 러목 내지 버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러. 건축법 제21조 제7항 및 동법시행령 제19조 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사감리를 한 때	업무정지 2월	업무정지 1월
머. 법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설계도서 등을 비치·보관하지 아니한 때	업무정지 2월	
버. 영 제27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중 설계수급대장 또는 공사감리수급대장을 비치 또는 기재하지 아니한 때	업무정지 2월	

[별지 제30호 서식] 및 [별지 제34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1. 개정이유

건축사사무소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설계·감리할 수 있는 건축사의 범위를 확대하고 건축사업무정지처분기준을 조정하는 등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2. 주요골자

가. 건축사사무소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소속기관의 건축물을 설계 또는 감리할 수 있는 건축사의 범위에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에 소속된 건축사를 추가함(제15조의 2).

나. 건축사협회로 하여금 건축사보관리등수탁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함(제25조의 2).

다. 상주감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거나 설계도서·설계수급대장·공사감리수급대장 등을 비치하지 아니한 때에는 2월의 건축사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별표 3).

[별지 제34호 서식]

## 건 축 사 사 무 소

우편/주소 \_\_\_\_\_ /전화 \_\_\_\_\_ /전송/ \_\_\_\_\_ /담당 \_\_\_\_\_

문서번호 \_\_\_\_\_ 시행일 \_\_\_\_\_  
 수 신 \_\_\_\_\_ 발 신 \_\_\_\_\_ (인)  
 제 목 수탁(계약)업무 현황보고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취소등 행정처분을 받기전에 계약체결하여 현재 진행중에 있는 업무의 현황을 건축사법시행규칙 제23조 제1항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1. 건축사사무소 현황

- 사무소명 : \_\_\_\_\_ (등록번호 : \_\_\_\_\_ )
- 소재지 : \_\_\_\_\_ (전화번호 : \_\_\_\_\_ )
- 대표자 : \_\_\_\_\_ (면허번호 : \_\_\_\_\_ )
- 처분종류 : 면허취소 등록취소 업무정지
- 처분기간 : \_\_\_\_\_

2. 수탁업무 명세

연번	계약일	건물명	건 물 위 치	건축주	계 약 내 용	진도	비고

붙임서류 : 설계계약서 및 공사감리계약서 각 1부

30304-24311 보  
 '96. 3. 7 개정

210mm × 297mm  
 (신문용지 54g/m<sup>2</sup>)

공 사 감 리 수 급 대 장

연 번	계 약 일	건 물 명 칭		용 도	진 축 주 도	진 축 대 지 면 적	연 면 적	진 축 면 적	건 폐 용 적	설 계 감 리 자	자 자	시 공 자 허 가 일	자 공 자	작 공 일
		위 치	구 조											

297mm × mm  
신문용지 54g/m<sup>2</sup>

30340-13511 비  
1996. 3. 7. 개정